

성동스페이스 임차인 모집공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9길 46(마장동 767-7, 8번지)

■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0호(특별공급 10호, 일반공급 30호)

■ 임대사업자 : 주식회사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 공 사 : (주)아이티엠이앤씨

■ 당사는 모델하우스를 운영하지 않으며, 임차인 모집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VR 및 세대평면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임차인 모집 청약접수는 청약홈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임차보증금 납부를 위한 임차인 대출 지원 및 연계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출가능여부는 임차인 본인이 사전에 확인 후 청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동스페이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상담전화(☎031-8068-6321)을 통해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 및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전화 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이 주택은 주식회사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이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최하층 우선 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퇴거요인(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식회사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관리, 전유부 시설관리, 임대관리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위탁업체인 우리레오PMC(주)가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6.08.06.(목)]이며, 이는 최초 청약자격조건(연령,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혼인여부, 소득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6.08.06.(목)] 현재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가.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나. 특별공급 대상자
 -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나)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임차인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6.08.06.(목)]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최초 계약서의 자격 요건을 적용 및 확인하며, 이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3)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연령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의 경우 자격 요건상의 기준을 30퍼센트 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모집공고문은 공간지원리츠(<https://www.spacereits.co.kr>),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https://www.i-sh.co.kr>),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https://www.seoulreits.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하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 신한인증서 또는 ⑦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의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선정, 예비자 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30세대)은 총 세대수(40세대)에서 특별공급(10세대) 세대를 제외하고 공급될 예정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향후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성동구청과 협의 후에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임대무기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 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일반)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 전부를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시	2026.08.12.(수), 2026.08.13.(목), 2026.08.14.(금) (09:00 ~ 17:30)	2026.08.21.(금) 16:00	2026.08.24.(월) ~ 2026.08.26.(수)	2026.09.07.(월) ~ 2026.09.11.(금)
방 법	인터넷 청약접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공간지원리츠(https://www.spacereits.co.kr)	이메일, 등기우편 중 선택하여 제출 이메일 : 사본(스캔본)제출(이메일 제출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필수) 등기우편 : 원본제출(2026.08.26.(수) 소인분까지 유효)	성동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9길 46, 101호)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https://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이메일 주소 : sdspace@woorileopmc.com 등기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9길 46, 101호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성동구청 주택정책과-21685(2026.07.31.)으로 임차인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9길 46(마장동 767-7, 8번지)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1층 ~ 지상 6층 4개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0세대(특별공급 10세대, 일반공급 30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09월 예정(입주지정기간: 2026년 09월 14일(월)~11월 13일(금),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타입	세부 타입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부타입별 세대 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합계	입주 지정기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신혼부부			
2026850039	38	38	38.73	8.46	47.19	15.53	62.72	2	-	2	2	2026년 09월14일 ~11월13일
	39	39A	38.84	8.51	47.35	15.56	62.91	1	-	2	2	
		39B	39.49	8.65	48.14	15.82	63.96	1				
	48	48	48.79	10.66	59.45	19.55	79.00	2	-	2	2	
	49	49A	48.84	10.70	59.54	19.56	79.10	1	-	2	2	
		49B	49.61	10.86	60.47	19.87	80.34	1				
	53	53A	54.07	8.79	62.86	21.67	84.53	5	10	-	10	
		53B	53.47	8.69	62.16	21.42	83.58	5				
	54	54A	54.63	8.84	63.47	21.89	85.36	5	-	10	10	
		54B	53.33	8.63	61.96	21.37	83.33	5				
	57	57A	57.00	12.48	69.48	22.85	92.33	1	-	6	6	
		57B	57.88	12.68	70.56	23.19	93.75	1				
		57C	57.18	12.52	69.70	22.92	92.62	2				
		57D	58.06	12.71	70.77	23.26	94.03	2				
	58	58A	57.88	12.64	70.52	23.19	93.71	2	-	6	6	
		58B	58.06	12.68	70.74	23.26	94.00	4				
합 계								40	10	30	40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특별공급타입과 일반공급타입의 타입이 상이하므로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별 접수를 시행하며, 타입 내의 각 세부타입(A,B,C,D)은 선택이 불가하고 타입 내에서 세부타입(A,B,C,D)-동·호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을 하여 당첨자를 선발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별 접수를 시행하고 동일한 타입 내의 각 세부타입(A,B,C,D)별로 면적이 상이하나 동일 타입 내의 세부타입(A,B,C,D)은 동일한 임대료를 적용 받으니 청약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사항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세부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준공도서에 표시된 세부타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기타 공용면적은 주택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세부타입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준공 시점 면적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청약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별 타입, 세부타입, 동호수 표기안내

(면적 단위 : m²)

타입 표기 방식	38	39		48	49		53		54		57				58	
청약 시 전용면적(m ²)	038.7300	038.8400		048.7900	048.8400		054.0700		054.6300		057.0000				057.8800	
공급유형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특별	특별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동	101	104	104	101	104	104	103	103	102	102	104	104	104	104	101	101
호수	601,602	601	602	501,502	501	502	201,301, 401,501, 601	202,302, 402,502, 602	201,301, 401,501, 601	202,302, 402,502, 602	201	202	301,401	302,402	201,202	301,302, 401,402
세부타입 표기 방식	38	39A	39B	48	49A	49B	53A	53B	54A	54B	57A	57B	57C	57D	58A	58B

- 타입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모집공고문 및 카탈로그는 타입으로 표현되어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 세부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타입 내의 각 세부타입(A,B,C,D)별로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 상이하나 동일 타입 내에 속한 세부타입(A,B,C,D)은 동일한 임대료가 적용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별 접수를 시행합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각 타입의 대표면적으로만 표기되며, 동일 타입 내 세부타입(A,B,C,D)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타입 내에서 세부타입(A,B,C,D) 동·호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을 하여 당첨자를 선발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사업자 임대무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임대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표준형)

(세대수 단위 : 호, 금액 단위 : 원)

타입	세부 타입	공급유형	동 구분	호수 구분 (동호배치표 참고)	공급세대수	표준형 임대보증금 / 납입시점			표준형 월 임대료
						총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38	38	일반공급	101	601, 602	2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529,000
39	39A, 39B	일반공급	104	601, 602	2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516,000
48	48	일반공급	101	501, 502	2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783,000
49	49A, 49B	일반공급	104	501, 502	2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762,000
53	53A, 53B	특별공급	103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10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605,000
54	54A, 54B	일반공급	102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10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880,000
57	57A, 57B 57C, 57D	일반공급	104	201, 202, 301, 302, 401, 402	6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929,000
58	58A, 58B	일반공급	101	201, 202, 301, 302, 401, 402	6	150,000,000	15,000,000	135,000,000	954,000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율(인상분)은 계약갱신 시에 일괄 반영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상기 타입별 임대조건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타입별, 동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수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임대주택은 건축법 상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으로 전 세대가 발코니 확장이 해당되지 않으며,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된 세대는 없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임대조건 선택 안내

- 최초 계약 시 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선택형3 총 4개의 임대조건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전 임차인이 선택한 임대조건(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선택형3)은 계약해지(중도해지, 만기해지 등) 시점까지 다른 임대조건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년 단위 갱신계약 시점에도 임대조건 변경 불가합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별 접수를 시행하나 동일한 타입 내의 각 세부타입별(A,B,C,D)로 면적이 상이하나 동일 타입 내의 세부타입(A,B,C,D)은 동일한 임대료를 적용 받으니 청약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사항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표준형 임대조건에 적용한 바와 같이 선택형1, 선택형2, 선택형3의 경우에도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이고 계약 시점에 납부, 잔금은 임대보증금의 90% 금액이고 입주지정일 시점에 납부를 적용합니다.(예시 : 53타입의 선택형3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2억원이므로 계약금은 2천만원, 잔금은 1억8천만원입니다.)
- 아래의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율(인상분)은 계약갱신 시에 일괄 반영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주택 타입별 임대조건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 타입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수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우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유보금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세대수 단위 : 호, 금액 단위 : 원)

타입	공급유형	동 구분	호수 구분 (동호배치표 참고)	공급 세대 수	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선택형3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38	일반공급	101	601, 602	2	150,000,000	529,000	50,000,000	945,000	70,000,000	862,000	100,000,000	737,000
39	일반공급	104	601, 602	2	150,000,000	516,000	50,000,000	933,000	70,000,000	850,000	100,000,000	725,000
48	일반공급	101	501, 502	2	150,000,000	783,000	70,000,000	1,116,000	100,000,000	991,000	200,000,000	575,000
49	일반공급	104	501, 502	2	150,000,000	762,000	70,000,000	1,095,000	100,000,000	970,000	200,000,000	554,000
53	특별공급	103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10	150,000,000	605,000	70,000,000	939,000	100,000,000	814,000	200,000,000	397,000
54	일반공급	102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10	150,000,000	880,000	100,000,000	1,088,000	200,000,000	672,000	250,000,000	463,000
57	일반공급	104	201, 202, 301, 302, 401, 402	6	150,000,000	929,000	100,000,000	1,137,000	200,000,000	720,000	250,000,000	512,000
58	일반공급	101	201, 202, 301, 302, 401, 402	6	150,000,000	954,000	100,000,000	1,162,000	200,000,000	745,000	250,000,000	537,000

Ⅲ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공통)

-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8.06.)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예비임차인 선정방법

모집분야		선발인원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혼부부	10명 (53타입)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8.06.(목)] 기준 혼인 중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예비임차인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9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1,00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임차인 선정 시에도 위의 순위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2인 중 계약자 1명을 대표로 정하여 1주택을 신청(청약)하여여 함)의 경우에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경우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8.06.(목)]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각 공급 방식 중 1곳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입주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은 반드시 53타입으로 청약을 신청하셔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신청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 기준 산정

(금액 단위 : 원)

순위	비율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6년 적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순위	100% 이하	~3,813,363원	~5,866,270원	~8,168,429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2순위	100% 초과	3,813,364원~	5,866,271원~	8,168,430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110% 이하	4,194,699원	6,452,897원	8,985,272원	9,682,422원	10,259,684원	10,896,889원	11,534,095원	12,171,301원
3순위	110% 초과	4,194,700원~	6,452,898원~	8,985,273원~	9,682,423원~	10,259,685원~	10,896,890원~	11,534,096원~	12,171,302원~
	120% 이하	4,576,036원	7,039,524원	9,802,115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방법

- 특별공급(신혼부부) 청약신청, 임차인 선정, 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및 전산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임차인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타입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타입별 공급세대의 90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비롯하여 공간지원리츠(<http://www.spacereits.co.kr>)에서도 별도 게시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선발인원	자격요건
일반 공급	30명 (38타입, 39타입, 48타입, 49타입, 54타입, 57타입, 58타입)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8.06.(목)]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중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규정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이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 신청불가)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 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업주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계약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청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8.06.(목)]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방법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천의 방식으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예비임차인 선정방법	- 임차인 선정 시 타입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타입별 공급세대의 9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천의 방식으로 예비임차인을 선정합니다. 예비임차인의 동·호수 배정(미계약세대 등이 2개 세대 이상 발생 시)은 임대사업자가 별도 추천을 실시합니다. - 본 공급의 예비임차인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비롯하여 공간지원리츠(https://www.spacereits.co.kr)을 통해서도 별도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임차인 미계약 주택)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모든 타입 공통	10만원	- 주택청약 참가은행(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IM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중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은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써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 및 출금하여 청약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대상 : 청약자 전원(당첨자, 예비임차인 및 낙첨자 전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되며, 청약신청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기간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이용안내	주택청약 참가은행(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IM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 및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사용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에 하나의 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으신 분(※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PC 청약] -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선택」 ⇒ 청약신청하기 - 청약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주택선택 ⇒ 유의사항확인 ⇒ 공급유형 선택(일반공급/특별공급) ⇒ 청약자격선택 ⇒ 청약자격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스마트폰 청약]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접속 후 청약방법은 PC 청약방법 참조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기간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 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 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입주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시간 17시 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하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 신한인증서 또는 ⑦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해야 하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의 입출금 자유계좌(청약통장이 아님)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청약이 2일 이상 진행되더라도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17시 30분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무주택 판정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사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내용이며, 해당 법령 조항의 6호, 9호, 11호는 제외)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IV

공급일정

■ 청약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약신청금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발표
특별공급	2026.08.12.(수), 2026.08.13.(목), 2026.08.14.(금) (09:00 ~ 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체가능금액 확인필요)	2026. 08. 21. (금) 16:00 청약홈(www.applyhome.co.kr) 공간지원리츠(https://www.spacereits.co.kr)
일반공급				

- 청약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톡인증서 중에 하나의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어도 구비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을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명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당첨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제출, 계약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구비서류 제출	2026.08.24.(월) ~ 2026.08.26.(수)		이메일, 등기우편 중 선택하여 제출 이메일 : 사본(스캔본)제출, sdspac@woorileopmc.com (이메일 제출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필수) 등기우편 : 원본제출, (2026.08.26.(수) 소인분까지 유효) 등기우편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9길 46, 101호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	2026.09.07.(월) ~ 2026.09.11.(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방문 불가)	임대계약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9길 46, 101호
	일반공급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임차인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자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부의 경우 당첨자의 배우자가 계약자 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일반/특별공급)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 공급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체결 불가
	○		3.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4.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

		○		5. 주민등록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6. 주민등록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8.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9.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 공급	신혼부부	○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2.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임대관리센터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경우
		○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합산 기간 7년 이내임을 확인, “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4.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원 소득
제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	• 임대관리센터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8.06.(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고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임대계약용)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도록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직장가입자만 해당)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획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임대관리센터 비치)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장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임대보증금(계약금)	우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계약 시 안내)	(주)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대보증금(잔금)			

- 글자수 표기 제한으로 예금주명이 상기 명칭과 다르거나 글자수가 제한되어 표기될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시 동·호수 및 성함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 101-902 홍길동)
- 계약금, 잔금은 세대별 가상계좌로 수납할 예정이며, 가상계좌번호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장소에서 계약자에게 별도 안내하오니 입금을 위한 준비를 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임대공급홍보관에서는 현금 및 수표로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체결일에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되 실 입주 이전 또는 실 입주일 당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임대료 납부계좌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 세대별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가상계좌와 동일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별도 기재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계약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월 임대료는 지정된 일자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월 임대료 납부일자는 별도 지정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별도 기재하여 안내 또는 별도 개별안내할 예정입니다.

VI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자 사전방문은 현재 당첨자에 한하여 진행 예정이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세대 방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세대 방문이 진행되는 경우 방문 예약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며, 세대 방문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이 시행되는 경우 세대 방문은 계약자 필수사항은 아니며, 희망자에 한하여 예약을 통해 진행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은 계약세대별 1회에 한하여 진행하오니 2회 이상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 사전점검은 지정된 기간 외에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은 세대 확인을 위한 방문으로 세대 내에 개인물품, 이삿짐, 가전제품 등의 일체의 물건을 적치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물건은 사전 고지 없이 세대에서 반출 및 폐기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시 세대 청소는 불가하며,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전 세대 청소를 위한 방문 가능여부는 추후 통지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6년 09월 예정(2026년 09월 14일(월) ~ 11월 13일(금))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지원센터의 위치, 운영요일, 운영시간은 추후 계약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이며, 입주지원센터는 평일 영업시간에만 운영예정이므로 주말 이사 시 입주증 발급을 평일에 완료하셔야 하므로 이 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에 입주지원센터에서 입주증(또는 잔금 완납증) 발급을 한 뒤 열쇠불출 후 세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입주증 발급일은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 및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의 부과 시점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계약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더라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키불출을 위한 입주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추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 중 운영시간 이외에는 입주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일 예약에 관한 일정 및 내용은 계약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이사일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이사일에 예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차량의 진입, 주차 및 엘리베이터의 사용에 있어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하루에 이사하는 세대수를 제한하므로 예약한 이사일 이외의 날짜에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 및 입주가 불가 하오니 필히 예약된 이사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일 미준수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은 임대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미계약 세대, 계약해지 세대 등으로 인한 최초 당첨자 이외의 추가당첨자의 경우 계약 시점에 따라 이사일 예약을 원하시는 일정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약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정해진 보호를 받게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대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에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정하여 기재 또는 별도 안내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이면서 동법 제4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음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49조 제3항 제3호 조항에 따라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1호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계약 이후 법정 기한 내 성동구청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해당 보증 가입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가입 기준에 따르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약관 등

-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의 사업주체를 보증기관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증약관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가입된 보증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가입된 보증기관의 보증약관을 따르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이 주택의 임대공급에 대한 사업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주식회사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이 주택을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기관인 (주)유안타증권에 자산보관 수탁하게 되나 수탁자인 (주)유안타증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보증금의 수령, 운용, 관리 및 그에 따른 수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주)유안타증권으로 신탁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부정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통화량이 많아 부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우려가 있사오니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임차인 모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당첨자는 모집공고 상의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 등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의 잔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임대보증금의 잔금,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금 전체를 해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삼백만원 예정, 유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유보금으로 우선 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세대원 및 동거인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10년)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설계·시공 상 유의사항

- 인허가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옹벽, 조경석,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의 스펙, 색상, 내용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총 대지지분을 각 타입별 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등기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 주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외의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소음발생, 분진발생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옥상공간, 옥외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이 배치되어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모집공고문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경우 1층에 외부인 이용가능시설(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방문주차 및 임시주차가 허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이소 도면, 평면도,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투시도,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 및 이미지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장소 및 입주지원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 및 동일지역의 타 시공사 및 동일 시공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 입주자 사전방문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하며,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 당월분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일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고지 및 공고문 부착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되

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 청약신청 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은 필수입력 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사용방법을 따릅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 또는 당사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등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계약 시 입주자에게 별도의 용자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지는 매도청구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시공관련 문의 및 시공상의 하자 관련 사항은 시공사 또는 당사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접수를 받게 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단지 내 시설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현장A/S센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사 및 입주자 등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 비용(임대료 등)을 상호 간에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 면적(m²) X 0.3025)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등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소음 및 분진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홍보용 이미지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사항을 임의 제작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평면 이미지, 카탈로그 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E-카탈로그 및 3D도면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각 면적별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E-카탈로그 및 3D도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천정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일의 나누기는(주방, 욕실, 발코니 등) CG 및 E-카탈로그 및 3D도면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모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 등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소품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표현되어 있어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카탈로그 및 3D도면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내공간에 환기가 부족한 경우, 약간의 습기에 의해서도 결로 및 곰팡이가 쉽게 발생되므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당 단지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은 법적인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 주택의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등은 단지공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단지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수종, 식재개수 등)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에 따라 옥상출입문은 평상시 잠김상태이며,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장치가 설치되어 평상시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소방법령 등에 의거하여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시공 시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모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변경 인허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단지연면적(추가) 등이 입주 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환경

- 단지 주변 타 부지에 대한 건설공사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수 있으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단지와 관련한 각종평가 내용 중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전자파, 전자기장애, 지장물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 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게공간, 옥외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 및 D/A, 한국전력공사 변압기, 쓰레기집적소, 재활용품 수거장 등으로 인한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1층 주동 출입구 부분 및 주변 제연헬륨 등에 의하여 동선 간섭 및 쉼 작동에 따른 소음 및 불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보안등, 조경용 조명 및 차량 불빛, 주변 건물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위치에 따라 주차장 접근성 및 이동거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으니 차량 주행 및 도보 이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위치에 따라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각 위치별 이동동선 거리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 출입문 형태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 도로변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는 식재 등으로 인한 일부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환기탑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진출입구, 외부도로 진출입구 등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단지 출입구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건물 내 또는 주변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인접 설치 및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전기선로, 통신선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입구 공용홀(EV홀) 규모 및 천장고는 출입구 위치, 타입별로 다를 수 있으며 청약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자동차등록증,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설비의 설치 위치 및 개소, 설치형태,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천장 상부는 각종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및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 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색 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되는 경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 PIT층 및 기계실 층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 및 지상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 지상 등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등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 중 일부 세대와 인접한 보관소는 저층세대에서 조망권 간섭 및 악취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필히 계약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이용 시 주택, 상가에 대하여 주차대수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비상도로에 의해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경사로는 일방향 편도용으로 설치되어 있어 차량 교행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또는 대부분의 세대에 한하여 타 건물 및 기타시설물 등에 의한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계약 전 단지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에서 발전되는 전기의 전부 또는 일부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태양광 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기존 계획과 상이하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동 옥상에 TV 공청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지하 및 지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전파상태에 따라 지상 녹지구간, 옥상,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안테나/중계설비 설치 위치에 따라서 일부 세대는 이동통신 등의 전파가 약하게 수신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는 이동통신 기간사업자의 사업내용이므로 입주 시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의 임대 관련 제공사항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등의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임대공급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세대 평면도, 아이소 및 실사VR은 각 타입별로 또는 유사 타입별로 제작되었으며, 각 타입 또는 유사 타입 내에 각기 다른 세부타입(A,B,C,D)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대 평면도, 아이소 및 실사VR과 상호 위치, 시설물 위치 등이 상이하오니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기본 천장고는 2.3m로 시공되며, 각 실의 천장 마감, 커튼박스 등의 설치에 따라 일부 부분은 기본 천장고와 상이한 높이로 시공되며, 욕실, 다용도실 등의 실의 경우 기본 천장고인 2.3m보다 낮은 높이로 시공됨을 확인하시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각종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은 배치공간 및 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 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및 배관이 주방가구 내부에서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세탁기 등이 다용도실에 설치되므로 공간 활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복도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부에는 렌지후드 배기 덕트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배관, 배선 등 타시설물과 간섭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등의 타일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보강되지 않은 면의 기타 시설물 설치 시 바닥 및 벽체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세대 내외부의 각종 배관 및 설비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 PD, PS 등에 설치된 배수배관 및 입상배관으로 인한 배수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욕실(샤워부스부위 및 일부구간 제외)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인근 실에서 통합제어됩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난방은 도시가스 개별난방 방식으로 제공되며, 복도 및 외벽 등에 가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아이소, 평면도 등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등), 욕실FAN 등의 스펙,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렌지후드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사이버 모델하우스, 아이소 등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용 전열교환기 본체는 다용도실 천장에 설치됩니다.
- 환기시스템용 전열교환기 필터는 소모품으로써 연 1~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 시간에 따라 교체 주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 수량(초기 전열교환기 환기시스템 내부설치분) 외 필터는 소모품으로 입주자(임차인)의 비용으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타 세대의 실외기 등의 설비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외부 침입 감지를 위한 동체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아이소 등에서 확인 가능한 월패드, 배선기구,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 시 사이버 모델하우스, 아이소 등의 위치 및 색온도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벽체 일부가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

의하여야 합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에 손상 및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마감재(바닥재, 타일, 도배지, 인조대리석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별 치수에는 천장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도면의 기준으로 적용하되 본 공사 시 입찰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동등수준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손잡이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문 개폐 시 욕실화가 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한 출입키와 세대 현관문키의 지급개수는 준공 시 결정되므로 입주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 및 가구장 문닫힘에 대한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내부 실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각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 아이소 등과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조석 등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이사 시 세대 창호 높이 등의 간섭에 의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침대, 불박이장, 김치냉장고, 쇼파 등)을 외부로 통한 세대내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사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다리차 이사가 불가한 경우 승강기를 통한 이사만 가능합니다.
- 단위세대에 설치되어 임차인이 사용하도록 빌트인으로 제공하는 가전제품에 대한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한 보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세대 내 가전제품을 망실 또는 파손 등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에 따라서 빌트인으로 설치되는 가전제품의 종류, 크기, 모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입주민 공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건축물로 별도의 주민공동시설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숙지하고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시설 관련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근린생활시설의 추후 입점자가 설치하는 주방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 연기 등으로 인해 세대 및 인근 주변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인승·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변부 등에 실외기 설치 계획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후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변부에 일부 실외기가 설치될 수도 있으며, 인근 세대에서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여건, 입점자의 사용 용도 등에 따라 입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은 각각 별도로 운영하나 필요 시 주차구획을 공유 및 점유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건축물로 입주 수 주민공동시설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차장 및 지하 계획

- 주차장은 자주식 형태이며, 지하 1층 및 1층 필로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 주차구획의 높이는 2.1m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법령 상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이 상이하하여 입주 후 유형별 주차대수 배정이 상이하므로 계약자는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공간이 완속 2개소로 계획되어 전기차 보유 차량대수에 따라 충전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입구의 제한 높이에 따라 택배차량은 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공동사용이며 세대별로 주차구획을 개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주차 가능대수는 총 33대(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전체 포함, 장애인 주차공간 포함, 전기차 충전공간 포함, 가족배려 주차공간 포함, 경형 자동차 포함 등)이며, 이 중 공동주택 분에 해당하는 주차구획은 32대(장애인 주차공간 포함, 전기차 충전공간 포함, 가족배려 주차공간 포함, 경형 자동차 포함 등)로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인 40세대보다 작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차가 불가 또는 유료 주차로 반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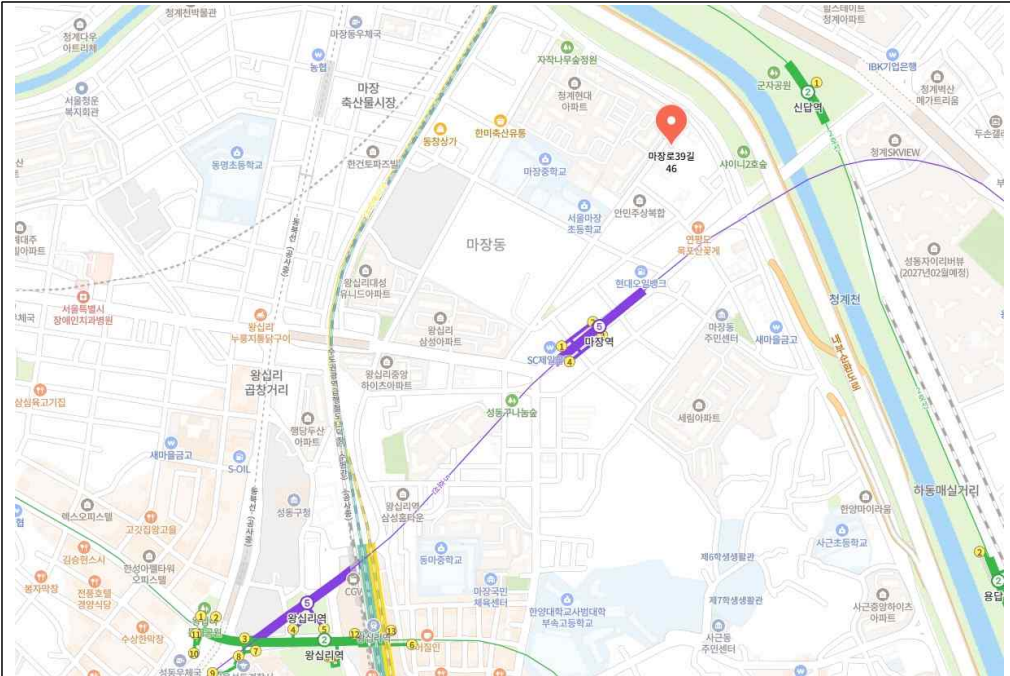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원, VAT 별도)	비고
건설공사 감리	도운건축사사무소	83,400,000	해당 감리금액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전체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금액임
전기공사 감리	(주)선진기술단	6,000,000	
정보통신공사 감리	청암엔지니어링	3,600,000	
소방공사 감리	(주)선진기술단	13,2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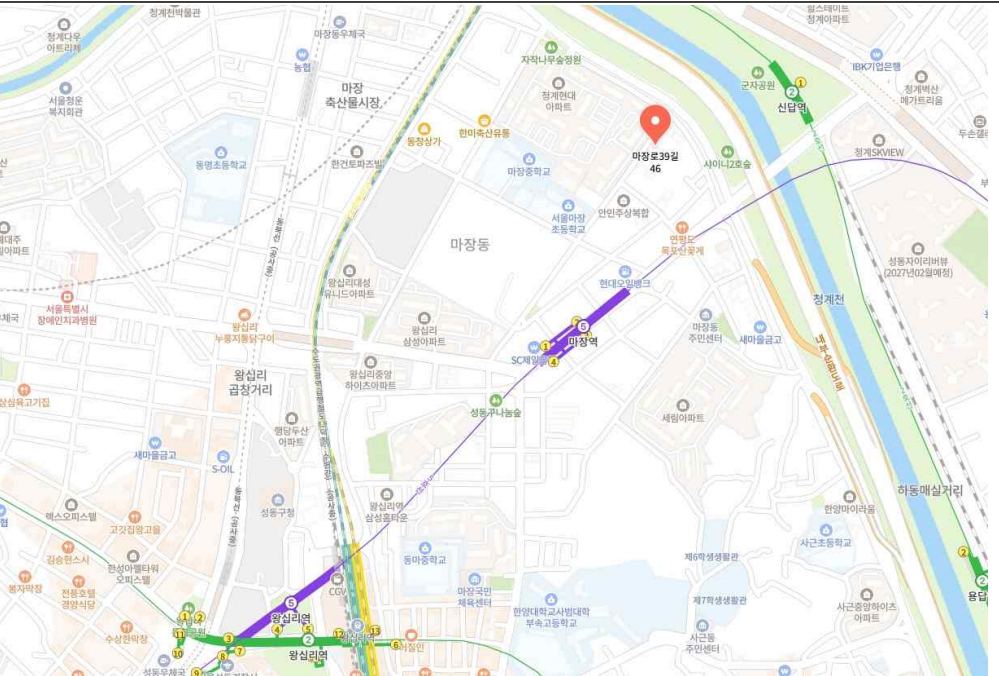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 분	임대사업 사업주체	시공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사업자명	주식회사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아이티엠이앤씨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주)유안타증권
법인등록번호	110111-7304150	204911-0011753	110111-6106234	110111-004249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 (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3층 303호(여의도동, 극동브이아이피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 (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여의도동, 앵커원)

■ 공급주택 및 계약체결장소 위치도



■ 공급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9길 46(마장동 767-7, 8번지)



■ 계약체결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9길 46(마장동 767-7, 8), 101호
 ■ 대표전화 : 031-8068-6321
 ※ 계약체결장소는 점심시간(12:00~13:00)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장소는 임대차 계약체결기간 및 일정기간 후 폐쇄 예정입니다.

동호수 배치표

101동			104동		
6F	601	602	6F	601	602
5F	501	502	5F	501	502
4F	401	402	4F	401	402
3F	301	302	3F	301	302
2F	201	202	2F	201	202
1F	상가	필로티	1F	필로티	

102동			103동		
6F	601	602	6F	601	602
5F	501	502	5F	501	502
4F	401	402	4F	401	402
3F	301	302	3F	301	302
2F	201	202	2F	201	202
1F	필로티		1F	필로티	

타입	38타입 (일반공급)	39타입 (일반공급)	48타입 (일반공급)	49타입 (일반공급)	53타입 (특별공급)	54타입 (일반공급)	57타입 (일반공급)	58타입 (일반공급)	합계
세대수	2	2	2	2	10	10	6	6	40